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996. 2. 5

보건사회위원회위원장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1996. 1. 20 부천시장
- 나. 회부일자 : 1996. 1. 25
- 다. 상정일자 : 제44회 부천시의회
- 다. 의결일자 : 제5차위원회(96. 2. 5)상정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환경보호과장)

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및 제품의포장방법과포장재질기준에관한규칙 개정에 따른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을 변경하고자 함

3. 전문위원검토보고요지

(전문위원 윤순중)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개정되는 조례로 늦은감은 있지만 개정함이 타당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 음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없 음

8. 기타필요한사항

없 음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4
------	----

제출년월일 : 1996. 1. 20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95. 2. 6 환경부령 제3호)및 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재의제질등의기준에관한규칙 개정(95. 2. 6 환경부령 제4호)에 따른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기준 변경

□ 주요골자

○ 신 설(안 제5조)——3개목

—식품류, 잡화류, 종합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의 감량화를 위한 연차별 감량화지침의 준수에 대한 조치명령 미 이행시
: 1차 2000천원, 2차 25000천원, 3차 3000천원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별표1】의 적용범·부과항목 및 부과금액중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란을“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거나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지”

과 태 료 부 과 기 준

적용법	개 정			
	부 과 함 목	부과금액(천 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이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1. 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한 각종 지침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13조제2항)			
	가. 재활용지정사업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000	2,500	3,000
	나. 제1종 지정사업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000	2,500	3,000
	다. 제2종 지정사업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500	2,000	3,000
	라. 지정부산물 배출사업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500	2,000	3,000
	2. 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질등의기준에관한규칙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제15조제2항)			
	가. 포장공간비율 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 기준보다 25% 미만 초과한 때	1,500	2,000	3,000
	(2) 기준보다 25% 이상 50% 미만 초과한 때	2,000	2,500	3,000
	(3) 기본보다 50% 이상 초과한 때	2,500	3,000	3,000
	나. 포장횟수 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 기준보다 1회를 더 포장한 때	1,000	1,500	3,000
	(2) 기준보다 2회를 더 포장한 때	1,500	2,000	3,000
	(3) 기준보다 3회 이상 더 포장한 때	2,000	2,500	3,000
다.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첩합(라미네이션) 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 사용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000	2,500	3,000	
라. 완구·인형 또는 종합제품의 포장에 발포폴리스틸렌계 포장재 사용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000	2,500	3,000	

적용법	개 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천 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이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마. 식품류·잡화류·종합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의 감량화를 위한 연차별 감량화 지침 준수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000	2,500	3,000
	바. 가전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가전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재질의 환충지의 감량화 지침에 따른 자체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000	2,500	3,000
	사. 가전제품을 품목별로 연간 2만 대 이상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완충재 감량화 전년도 실적과 당해년도 계획제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000	2,500	3,000
	아. 제조자 등이 가전제품 판매시 구매자가 요구하지 않을 경우의 그 포장재회수 의무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000	2,500	3,000
	3. 1회용품의 사용자제 등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15조제5항)			
	가.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중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66제곱미터 미만의 식품접객업소에서 1회용품(이쑤시개는 제외한다) 사용자제 및 합성수지로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제작·배포억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000	2,000	3,000
	나.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중 객실과 객석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및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품(이쑤시개는 제외한다) 사용자제 및 합성수지로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제작·배포억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500	2,500	3,000

적용법	개 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천 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이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다.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중 객석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및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 품 중 이쑤시개의 사용자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 하지 아니한 때	300	500	1,000
	라. 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에서 1회용품 무상제공 억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 일반목욕장업(공동탕, 가족탕, 한증막)	1,000	2,000	3,000
	(2) 특수목욕장업(사우나탕, 터키탕, 복합목욕탕)	1,500	2,500	3,000
	마. 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중 객실이 7 실 이상인 숙박업소에서 1회용품 무상제공 억제를 위 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 호텔및관광진흥법에 의한 콘도미니엄업	1,500	2,500	3,000
	(2) 여관업 및 여인숙업	1,000	2,000	3,000
	바.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 ·도매센터·쇼핑센터 및 매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 인 영업장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 및 합성수지로 도포 (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사용자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500	2,500	3,000
	사. 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터 및 쇼핑센터에서 화장품류 및 세제류를 판매하는 자가 포장용기의 재사용을 위 한 협조 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 우	2,000	2,500	3,000
	아.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에서 재 활용 제품의 교환·판매매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000	2,500	3,000
자.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락 제조업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할 때	1,500	2,500	3,000	

적용범	개 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천 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이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차.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가정용품 도매업, 종합소매업(백화점·대형점·도매센터·쇼핑센터 및 매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장은 제외한다)가정용기기·기구 및 장비 소매업, 기타 일반금융업, 기타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거래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전문강습소, 일반강습소, 영화제작 및 배급업, 영화상영업, 연극·음악 및 예술관련사업에서 합성수지로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사용자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000	2,000	3,000
	4. 일반폐기물의 재활용기준 준수 등 일반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16조제2항)			
	가. 각종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300	500	1,000
	나. 다량배출자로서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800	900	1,000
	5.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법 제34조제3항)			
	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지정사업자	300	500	1,000
	나.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지정사업자	300	500	1,000
	다.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 지정사업자	300	500	1,000
	라.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부산물배출 사업자	300	500	1,000
	마.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부과대상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300	500	1,000
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부과대상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300	500	1,000	

※ 1.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적용법	부 과 금 액	부 과 금 액(천원)			“별 지” 과 태 료 부 과 기 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적용법	부 과 금 액	부과금액(천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1. 1회용품 사용자제 등을 위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15조제5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1. 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한 각종 지침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13조제2항) 가. 재활용지정사업자가 조치명 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나. 제1종 지정사업자가 조치명 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다. 제2종 지정사업자가 조치명 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라. 지정부산물 배출사업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때 2. 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재의 재질등의기준에관한규칙 위 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제 15조제2항) 가. 포장공간비율 위반에 대 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 기준보다 25% 미만 초과 할 때 (2) 기준보다 25% 이상 50% 미만 초과할 때				
	가.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이 상 66제곱미터 미만인 식품 접객업소에서 1회용품 사용 자제 등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000	2,000	3,000			2,000	2,500	3,000	
	나. 객석면적이 66제곱미터 이 상의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 급식소에서 1회용품 사용자 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 하지 아니한 경우	1,500	2,500	3,000			2,000	2,500	3,000	
	다. 목욕장에서 1회용품 무상제 공 억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 일반목욕장업(공동탕, 가 족탕, 한증막)	1,000	2,000	3,000			1,500	2,000	3,000	
	(2) 특수목욕장업(사우나탕, 터키탕, 복합목욕탕)									
	라. 객실이 30실 이상인 숙박업 소에서 1회용품 무상제공 억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 행하지 아니한 경우 (1) 호텔및관광진흥법에 의 한 콘도미니엄업	1,500	2,500	3,000			1,500	2,000	3,000	
	(2) 여관업 및 여인숙업	1,000	2,000	3,000			2,000	2,500	3,000	

현		행			개		정			안		
적용법	부 과 금 액	부 과 금 액(천원)			적용법	부 과 금 액	부 과 금 액(천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마. 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터 및 쇼핑센터에서 1회용품 사용억제에 대한 조치명령 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500	2,500	3,00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3) 기준보다 50% 이상 초과한 때	2,500	3,000	3,000			
	바. 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터 및 쇼핑센터에서 화장품류 및 세제류를 판매하는 자가 포장용기의 재사용을 위한 협조사항에 대한 조치명령 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000	2,500	3,000		나. 포장횟수위반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사. 백화점에서 재활용제품의 교환, 판매매장의 설치·운 영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 하지 아니한 경우	2,000	2,500	3,000		(1) 기준보다 1회를 더 포장한 때	1,000	1,500	3,000			
	2. 토지 또는 건물에서 배출되 는 일반폐기물의 재활용 또 는 분리보관기준 준수를 위 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 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16 조제2항)					(2) 기준보다 2회를 더 포장한 때	2,000	2,500	3,000			
	가. 각종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 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 는 관리자 한 경우	300	500	1,000		(3) 기준보다 3회 이상 더 포장한 때	2,500	3,000	3,000			
나. 다량배출자로서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토지	800	900	1,000	다.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 하여 첩합(라미네이션) 또 는 도포(코팅)한 포장재 사 용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 하지 아니한 때	2,000	2,500	3,000					
				라. 완구·인형 또는 종합제품의 포장에 발포폴리스틸렌계 포장재 사용에 대한 조치명 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000	2,500	3,000					
				마. 식품류·잡화류·종합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의 감량화를 위한 연차별 감량 화지침 준수에 대한 조치명 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000	2,500	3,000					
				바. 가전제품의 제조·수입하는 자 가 가전제품의 포장에 사용되 는 합성수지재질의 완충재의 감량화지침에 따른 자체계획 의 수립·시행에 대한 조치명 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000	2,500	3,000					

※ 1.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현				행				정				안			
적용법	부 과 금 액	부 과 금 액(천원)			적용법	부 과 금 액	부 과 금 액(천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사. 가전제품의 품목별로 연간 2만 대 이상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완충재 감량화 전년도 실적과 당해년도 계획제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000	2,500	3,000	사. 가전제품의 품목별로 연간 2만 대 이상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완충재 감량화 전년도 실적과 당해년도 계획제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000	2,500	3,000		
				아. 제조자 등의 가전제품 판매 시 구매자가 요구하지 않을 경우의 그 포장재 회수의 무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000	2,500	3,000	아. 제조자 등의 가전제품 판매 시 구매자가 요구하지 않을 경우의 그 포장재 회수의 무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000	2,500	3,000		
						3. 1회용품의 사용자제 등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15조제5항)				3. 1회용품의 사용자제 등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15조제5항)					
						가.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중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66제곱미터 미만의 식품접객업소에서 1회용품(이쑤시개는 제외한다)사용자제 및 합성수지로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품 광고선전물의 제작·배포억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000	2,000	3,000	가.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중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66제곱미터 미만의 식품접객업소에서 1회용품(이쑤시개는 제외한다)사용자제 및 합성수지로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품 광고선전물의 제작·배포억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000	2,000	3,000		
						나.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중 객실과 객실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및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 급식소에서 1회용품(이쑤시개는 제외한다)사용자제 및 합성수지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품 광고선전물의 제작·배포억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500	2,500	3,000	나.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중 객실과 객실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및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 급식소에서 1회용품(이쑤시개는 제외한다)사용자제 및 합성수지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품 광고선전물의 제작·배포억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500	2,500	3,000		

현				개							
적용법	부 과 금 액	부 과 금 액(천원)			적용법	부 과 금 액	부 과 금 액(천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다.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33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및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품 사용자에게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300	500	1,000
				라. 료장에서 1회용품 무상제공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 일반목욕업(공동탕, 가족탕, 한증막)	1,000	2,000	3,000				
				(2) 특수목욕탕(사우나탕, 터키탕, 복합목욕탕)	1,500	2,500	3,000				
				마. 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중 숙박업소에서 1회용품 무상제공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1) 호텔및관광진흥법에 의한 콘도미니엄업	1,500	2,500	3,000				
				(2) 여관 및 여인숙업	1,000	2,000	3,000				
				바.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도매점·소형점 및 매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장에 1회용품 사용자제 및 합성수지로 도포(코팅)된 또는 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품 광고선전물의 사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2,000	2,500	3,000				
				사. 백화점, 대형점, 도매점, 소형점, 서점, 타점 및 세류용기 판매자가 용품을 위한 협조사항							

현				정											
적용법	부과금액	부과금액(천원)			적용법	부과금액	부과금액(천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	대한 조치 때 명령을 이행 하지 아니한 경우 아.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에서 재 활용제품의 교환·판매매장 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자.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 에 의한 도시락 제조업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를 위한 조치명령 하지 아니한 자 차.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 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 준산업분류표상의 가정용품 도매업, 종합소매업(백화점 ·대형점·도매센터·쇼핑센터 및 매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장은 제외한다) 가정용기기·기구 및 장 비소매업, 기타 일반금융업, 기타금융업, 보험 및 연금 업, 증권거래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전 문강습소, 일반강습소, 영화 제작 및 배급업, 영화상영 업, 연구·음악 및 예술관련 사업에서 합성수지로 도포 (코팅) 또는 칩합(라미네이 션)된 1회용품 광고선전물 의 사용자를 위한 조치명령 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000	2,500	3,000	1,500	2,500	3,000	1,000	2,000	3,000

현					개				
적용법	부 과 금 액	부 과 금 액(천원)			적용법	부 과 금 액	부 과 금 액(천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	4. 일반폐기물인 재활용기준 준 수 등 일반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16조제2항)	300	500	1,000
						가. 각종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미터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 자			
						나. 다량배출자로서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 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5.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법 제34조제3항)			
						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지정사업자			
						나.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제1종 지정사업 자			
						다.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제2종 지정사업 자			
						라.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지정부산물배출 사업자			
						마.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예치금부과대상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한 부담금부과대상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 1.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의 한도에서 산입한다.